



보도	2024.11.6.(수) 석간	배포	2024.11.5.(화)		
담당부서	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지급여력제도팀	책임자	국 장	이태기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박정현	(02-3145-7244)

K-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및 홈페이지 게시

◆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-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.

※ '24.11.7. "K-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"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

[승인신청 매뉴얼 주요내용]

□ 내부모형 승인신청의 사전준비 단계부터 승인 및 적용까지의 절차, 내부모형 도입현황 점검을 위한 평가요소 등으로 구성

내부모형 승인절차(5단계)	내부모형 평가기준(5개 기준)
① 사전 협의	① 내부모형 운영
② 승인 신청	② 통제구조와 감시
③ 승인 심사	③ 내부모형 활용
④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	④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
⑤ 사후검증 결과 보고	⑤ 위험액의 산출 기준

1. 개요

□ K-ICS 지급여력비율($\frac{\text{가용자본}}{\text{요구자본}}$)에서의 '요구자본'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이 가능*

* 「보험업감독규정」§7-2⑦ :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(표준모형) 또는 회사의 자체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(내부모형)을 사용하여 요구자본 산출 가능

□ 금감원은 K-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K-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*해왔으며,

*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('23.6 ~ 10월), 보험업계·유관기관 등과 승인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('23.12월 ~ 현재)

○ “보험회사 K-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”(승인 절차 및 보험 위험액* 산출기준 등)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(업무자료 > 보험)

* K-ICS 지급여력기준금액(요구자본)은 ①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, ②일반손해보험위험, ③시장위험, ④신용위험, ⑤운영위험으로 구성. 이 중 ①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해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고 추후 이외 위험까지 확대할 예정

II. 매뉴얼의 주요내용

1 내부모형 승인 절차 (5단계)

◆ 내부모형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및 적용이 이뤄지기까지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

- ① 사전 협의
- ② 승인 신청
- ③ 승인 심사
- ④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
- ⑤ 사후검증 결과 보고

① (사전 협의)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내용 확인*

* 사전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내부모형 실행계획, 시스템 구축현황,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정 등을 협의

② (승인 신청)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,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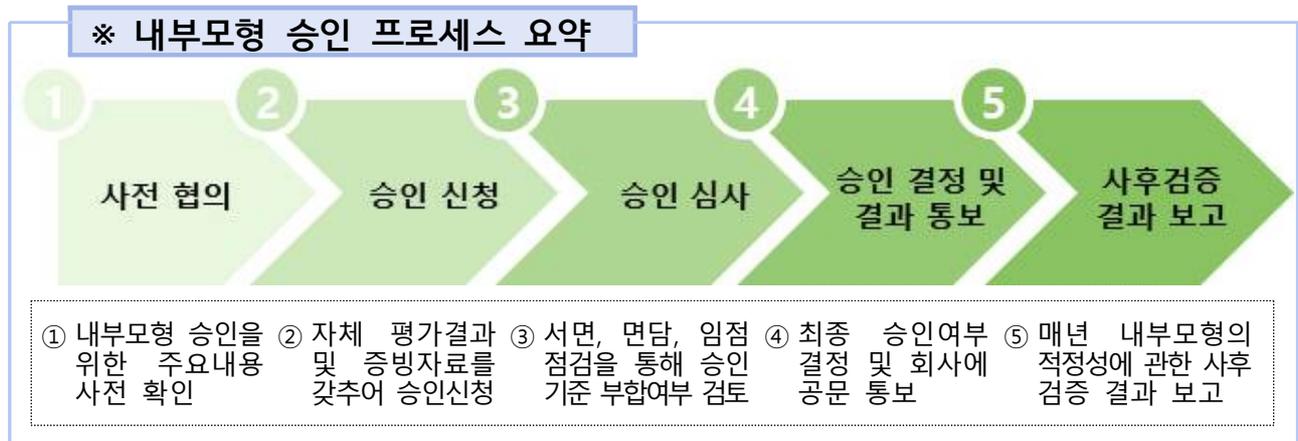
③ (승인 심사) 승인신청서, 입증자료,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*

* 내부모형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"K-ICS 내부모형 승인심사위원회 운영기준"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

④ (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)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*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회사에 공문으로 통보

*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

⑤ (사후검증 결과 보고)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 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



2 내부모형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 (5개 기준)

◆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회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질적 (①~④)·양적(⑤)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운영

- ① 내부모형 운영 (質)
- ② 통제구조와 감시 (質)
- ③ 내부모형 활용 (質)
- ④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(質)
- ⑤ 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액(충격수준 등)의 산출 기준 (質·量)

① **(내부모형 운영)** 내부모형의 산출·관리·변경 등에 관한 적절한 기준*을 마련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

* 모형 적합성, 데이터 및 산출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정기적인 검증절차 등

② **(통제구조와 감시)** 내부모형의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하고 운영부서와 통제부서 간 분리체계, 리스크 적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

③ **(내부모형 활용)**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활동*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

* 자산·부채 종합관리(ALM), 리스크 한도관리, 위기상황 분석 등

④ **(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)**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(ORSA) 운영 여부* 및 경영실태평가(RAAS) 비계량 평가 결과**

* ORSA 미운영 중인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적용일까지 ORSA 운영을 조건으로 승인

** RAAS 비계량평가항목 중 '경영관리리스크', '보험리스크'의 보험회사 자체 평가결과

⑤ **(위험액의 산출기준)**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(質) 및 위험액 산출결과(量)*의 적정성

* 직전 3개년 이상 내부모형을 이용한 산출결과, 표준모형과의 산출 결과 차이분석 등

III. 기대 효과

□ 본 매뉴얼은 내부모형 승인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, 평가를 위한 제약식* 등으로 구성

* 사전질문서, 승인신청서,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등

▶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IV. 향후 계획

- '25.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*을 「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」 개정을 통해 반영 추진

* 개별위험 내 하위위험의 단계적 도입 허용방안 등 내부모형 관리체계, 승인심사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

- '25.상반기 중 내부모형 예비신청서*를 접수하여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 협의

* 보험위험액 중 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해 우선 접수 예정

- '25.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'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토록 추진